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 년 7 월 25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영문명)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shbnppam.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18, 19층
(전 화) 02-767-5777

대 표 이 사 : 최방길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
(성 명) 장덕진 (전 화) 02-767-5720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이영규 (전 화) 02-767-9080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9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2011나93089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2.07.18
7. 확인일자	2012.07.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2.07.19 원고 상소

1. 사건의 명칭	2011나13007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성림쓰리에이통상 주식회사 외 7명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2.06.28
7. 확인일자	2012.06.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2.07.19 원고 상소

1. 사건의 명칭	2010나79420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랠리유통 외 10명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2.06.28
7. 확인일자	2012.06.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2.07.19 원고 상소

1. 사건의 명칭	2010나118875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사조산업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2.06.27
7. 확인일자	2012.06.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건의 명칭	2010가합60351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강호에이엠씨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2.04.20
7. 확인일자	2012.04.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2.05.14 원고 상소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79366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1.08.24
7. 확인일자	2011.08.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1.09.16 원고 상소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26324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거성 외 12명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1.01.28
7. 확인일자	2011.01.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1.02.25 원고 상소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18880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에이미트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1.01.13
7. 확인일자	2011.01.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1.02.09 원고 상소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26973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성림쓰리에이통상 주식회사 외 7명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0.11.12
7. 확인일자	2010.11.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0.12.03 원고 상소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20500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사조산업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0.10.13
7. 확인일자	2010.10.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0.11.02 원고 상소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30590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랠리유통 외 10명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전액 승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0.06.24
7. 확인일자	2010.06.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0.07.15 원고 상소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법인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4)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